

법령 I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**비상대비자원 관리법(시행령 포함)**

문 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이 아닌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면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‘과학기술자’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19세가 되는 날부터 대상자원이 되고 60세가 되는 날에 대상자원에서 제외된다.
- ④ 외국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‘자격을 취득한 사람’에 포함되지 않는다.

문 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기본지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은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,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.
- ②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본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와 같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기본지침은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으로서 국무총리가 5년마다 작성한다.
- ④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은 물론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도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.

문 3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집행계획은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, 자원의 조사·지정 등에 관한 사항,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.
- ④ 시행계획의 수립권자는 그 계획 중 다른 계획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문 4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·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자에게 조사 또는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- ②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(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)에게 하게 할 수 있다.
- ③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필요한 사항의 신고는 업체의 장뿐만 아니라 인력자원대상자에게도 하게 할 수 있다.

문 5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는 주무부장관이 한다.
- ②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거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,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.

문 6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조치는 국가정보원장이 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유할 수 있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, 그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.

